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개선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근거 마련》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89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제220808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 변경 (안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3항)	3
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근거 마련 (안 제39조의2 신설)	10
다. 부칙	12

I.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제220808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기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12.

다. 회 부 일 : 2025. 2.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이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선접수된 이의신청이 후속 이의신청자의 의견과 충돌하여 분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 상황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방향 도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국무조정실에서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개별 평가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을 분리하여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제21조
의2 및 제39조의2).

3. 검토의견

가.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 변경(안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② (생 략)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u>이의신청서가 접수된</u>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u> ----- ----- -----.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 ② (생 략)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u>이의신청을 받은</u>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u> ----- ----- ----- ----- ---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함)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¹⁾ 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을 각각 개편하려는 것으로,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지적재조사법」 제17조2)에 따른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 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일을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변경하고(안 제17조제3항),

같은 법 제21조의23)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의 기산일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서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 경우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45일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 21조의2제3항).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⁴⁾가 발생하여 경계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디지털 지적 체계로 변환·구축하는 사업임⁵⁾.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⁶⁾, 시·도지사⁷⁾가 수립하는 시·도종합계획⁸⁾ 및 지적소관청⁹⁾이 수립하는 실시계획¹⁰⁾을 기반

4)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를 의미함. 전국의 지적불부합지는 554만 필지로 전국 3,743만 필지의 14.8%에 해당함.

5)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요는 ‘참고 1’ 참조.

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시·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으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¹¹⁾, 경계결정¹²⁾, 경계 확정¹³⁾ 및 사업완료
공고·공람¹⁴⁾의 절차로 진행되며¹⁵⁾,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해당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경계 확정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통보된 조정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
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시·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
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① 시·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
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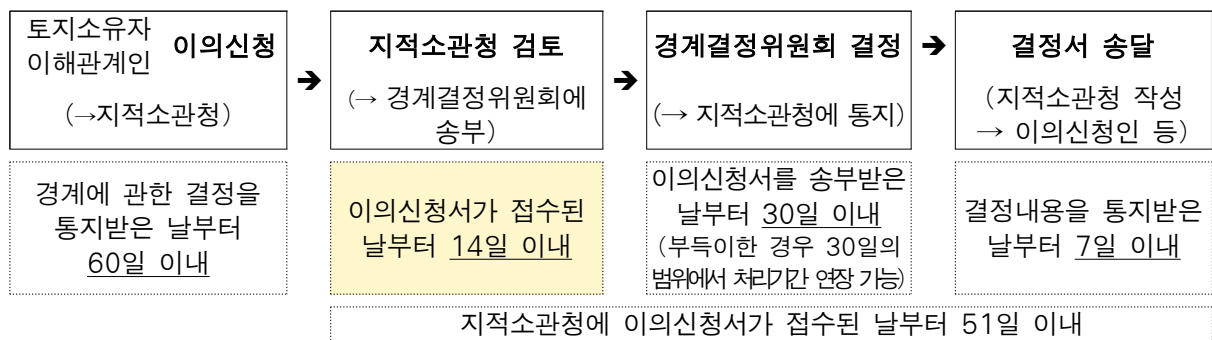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
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
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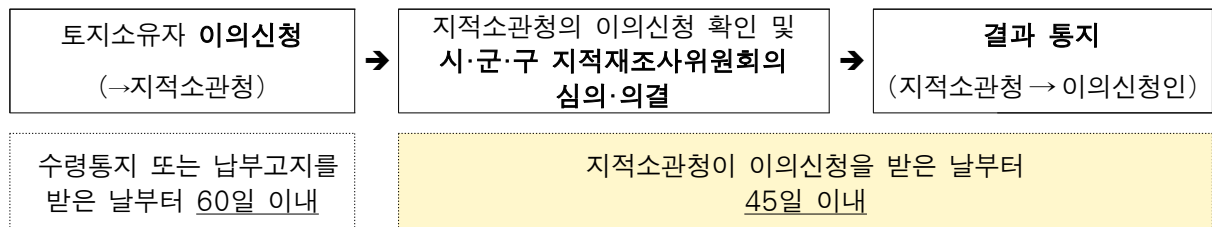
15)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 절차는 ‘참고 2’ 참조.

현행법상 경계결정 또는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이의신청서가 지적소관청에 접수된 날 또는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지적소관청의 검토를 비롯하여 경계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표 1〉 경계결정 이의신청 처리 절차



〈표 2〉 조정금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와 같이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을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 정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36조¹⁶⁾에서

16)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는 것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각 이의신청은 먼저 접수된 이의신청부터 순차적·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경계결정 또는 조정금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¹⁷⁾ 먼저 접수된 이의신청의 의견이 후속 이의신청보다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후속 이의신청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로 이어지며 효율성 저하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을 모두 종합하여 관련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예를 들어, 경계결정의 경우 각각 등록경계와 현실경계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경우 조정금을 주어야 하는 토지소유자는 하향 조정을, 조정금을 받아야 하는 토지소유자는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1조¹⁸⁾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을 접수순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절차에 따르면 선 접수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와 후속 이의신청인의 의사가 충돌할 가능성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안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2(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적소관청에서 시행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 등 사업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39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지적소관청에서 시행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 등 사업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재조사사업은 총사업비 1조 3,000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동 사업의 추진실적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¹⁹⁾의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량과 추진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19)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과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실시 근거 강화를 위해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부칙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9조의2제2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안 제39조의2제2항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부칙은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 제17조제3항과 안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 또는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개편되는 경우,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지 개정규정을 적용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²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안 제17조제3항과 안 제21조의2제3항의

20)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을 종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 3. 19. 개정, 2024. 9. 20. 시행) 시 적용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20395호, 2024. 3. 19.>

제3조(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각각 개정 법률 시행 이후의 경계 결정 통지 또는 조정금의 수령통지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참고1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 (사업내용)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디지털지적으로 변환 및 구축하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 필지 (전국 3,743만 필지의 14.8%)	'12 ~ '30 (19년간)	1조3천억원 ('12년 예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 9. 16. 제정)

□ 추진현황 및 성과

- '12~'24년까지 국비 **3,855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량 **542만 필지** 대비 **190만 필지(35.1%)** 추진 완료 또는 진행 중
- ①정형화, ②저축해소, ③맹지해소 평균 3.1% 향상으로 토지가치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 재조사분야 노동시장 확대 등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술자 아카데미 실시 및 책임수행기관제도 운영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 지적측량업체 215社 중 146社로 참여율 전년比 62% → 68% 상승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